

【 6 】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7. 9. 25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현행 토지평가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각 2명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 
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토지평가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으로 함.

(안 제7조 제1항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간사등) 제1항중 “간사2인과 서기2인”을 “간사1인과 서기1인”으로 하고, 동  
조 제2항중 “실무계장의 1인으로 한다”를 “실무계장이 되며,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 
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간사등) ①위원회에 <u>간사2인</u> <u>과 서기2인</u>을 둔다.</p> <p>②간사는 실무과의 <u>실무계장의 1</u> <u>인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(간사등) ①-----<u>간사1인</u> <u>과 서기1인</u>-----.</p> <p>② ----- <u>실무계장이</u> 되며 <u>서기는 실무담당자로</u>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
###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

[1989. 11. 15]  
[조례 제1294호]

개정 1995. 4. 13 조례 제1530호

개정 1996. 7. 8 조례 제1573호

개정 1996. 10. 28 조례 제1596호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구성) ①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3 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지가의 공시를 위한 표준지 선정 및 조사, 평가에 관한 사항
2. 토지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토지평가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 5 조(회의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다만,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 6 조(의사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조(간사등) ①위원회에 간사2인과 서기2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실무과의 실무계장의 1인으로 한다.

③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,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 6 편 재 무 제 3 장 관 재 · 세 외 수 입 양 주 군 토 지 평 가 위 원 회 설 치 조 례

제 8 조 (의견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9 조 (회의록) ① 간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.

가. 개최일시 및 장소

나. 출석의원 성명

다. 심의 사항

라. 위원 발언요지

마. 심의결과

바. 기타 중요사항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소위원회등)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 2 조 제 2 항을 준용하고 위원은 3~7인 이내로 한다.

③ 회의소집은 제 5 조를 준용한다.

④ 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후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 상정

2.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

제 11 조 (수당과 여비)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“양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시행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13 조 (회의의 비공표)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 (1989.11.15 조례 제129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6 편 재무 제3장 관재·세외수입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

부 칙 (1995. 4.13 조례 제153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6. 7. 8 조례 제157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6. 10. 28 조례 제159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6 편 재 무 제 3 장 관 재 · 세 외 수입 양 주 군 지 방 토 지 평 가 위 원 회 설 치 조 례

부 칙 (1995. 4.13 조 례 제 1530 호)

이 조 례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.

부 칙 (1996. 7. 8 조 례 제 1573 호)

이 조 례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.